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58호 2023. 10. 24.(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135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310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3

남해군 공고 제2023-1312호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7

남해군 공고 제2023-1322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남해군 공고 제2023-1324호 건설기계종중사 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안내 .. 13

남해군 공고 제2023-1336호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15

남해군 공고 제2023-1340호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9

남해군 공고 제2023-1353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23

남해군 공고 제2023-1356호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남해군 공고 제2023-1366호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4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135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남해군 어린이시설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남 해 군 수

1.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시 설 명	주 소	보호구역지정구간	비 고
미조하나어린이집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62	연장(L)=260m	

4. 보호구역 관련 문의처 : 남해군 건설교통과 도로팀 (☎ 055-860-3316)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청 위치도



위치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62(지정범위 260m)
-----	----------------------------



현장사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62(지정범위 260m)
------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310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지방도1024호선 두곡지구 위험지역 개선공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1024호선 두곡지구 위험지역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지방도1024호선 두곡지구 위험지역 개선공사
- 나. 위 치 : 남해군 남면 당항리 436-2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굴곡도로 개량 L=280m
- 라. 시 행 자 : 경상남도지사

2. 보상계획 및 열람

가. 토 지 : 남해군 남면 당항리 436-2번지 일원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10.4. ~ 2023.10.19.

나. 열람 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및 보상방법

가.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나.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라.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마.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7.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4)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경남 남해군 남면 당항리

동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2096	도	5,347	548	국	국토교통부
	2	산308-2	도	3,583	2,174	국	남해군
	3	산308-14	임	36	36	김*환	부산광역시 수영구
	4	440-9	전	89	89	김*환	부산광역시 수영구
	5	산308-15	임	20	20	국	경상남도
	6	436-4	도	3	3	김*복	석교리 885
	7	436-7	답	1,109	1,109	국	경상남도
	8	436-2	도	520	33	국	남해군
	9	2095	구	695	125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산296-4	임	131	131	박*엽	석교리 86
	11	산295	도	3,413	1,060	국	남해군
	12	36-3	도	290	54	국	남해군
	소 계			15,236	5,382		

남해군 공고 제2023-1312호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남해군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결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0월 2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54,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860-34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수”란 20대 이상 50대 미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322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기한 연장(제7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0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826,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전화 055-860-3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324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6일

남 해 군 수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0. (15일간)

고시공고 대상

번호	면허번호	면허종류	이름	주소	반송사유	비고
1	경남182015033***	골짜기,지게차	장*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화진로96번길 ***,***호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	경남242016001***	3톤미만굴착기,3톤미만지게차	이*기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7번길 **, *동, *층 ***호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3	경남342015022***	지게차	김*	경상남도 남해군 황선면 황선로171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4	충남282016008***	3톤미만굴착기,3톤미만지게차	노*원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538번길 ***-**, *층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5	경남172016011***	굴착기	임*문	경상남도 남해군 황선면 황선로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6	전남052016007***	3톤미만지게차	고*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화진로 **-*-**, ***호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7	경기922016019***	3톤미만굴착기	김*근	경상남도 남해군 고원면 탑동로76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8	경남152020010***	3톤미만지게차	곽*근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9	경남062020013***	굴착기	우*복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10	경남172020003***	3톤미만굴착기,3톤미만지게차	장*훈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화진로78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11	경남242017000***	3톤미만굴착기	박*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화진로38번길 **-*-*, *동 ***호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12	경남242015000***	광기압축기	김*위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7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13	경남242015001***	지게차	양*봉	경상남도 남해군 황선면 황선로 미조로694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14	경남242013003***	3톤미만지게차	김*성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오동로 **, ***호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15	경남242015001***	3톤미만지게차	최*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화진로96번길 **, ***동 ***호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16	부산222018001***	3톤미만굴착기	이*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303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17	경남242018000***	3톤미만굴착기	서*욱	경상남도 남해군 황선면 황선로944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18	경남172018003***	3톤미만지게차	곽*호	경상남도 남해군 황선면 동부대로2843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19	경남302018000***	굴착기	조*중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강진면로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0	경남322018020***	3톤미만지게차	김*진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양운로21번길 ***-**, ***호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1	경기222018068***	3톤미만지게차	김*영	경상남도 남해군 고원면 탑동로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2	부산162018018***	3톤미만지게차	남*경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고실로2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3	경기062018089***	3톤미만지게차	A*KI RYOTA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7번길 **, *동, ***호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4	경남152019008***	3톤미만굴착기	하*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양운로10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5	경기852019031***	굴착기, 지게차	하*욱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화진로96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6	경남242020002***	3톤미만지게차	하*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양운로10번길 **, ***호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7	울산112020016***	3톤미만굴착기	최*시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8	부산252019016***	3톤미만굴착기	강*희	경상남도 남해군 황선면 동부대로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29	경남242020003***	3톤미만지게차	김*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화진로 ***, ***동 ***호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30	경남192020014***	굴착기	송*원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암로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31	경남152020048***	3톤미만지게차	장*준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942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32	광주062020103***	3톤미만지게차	이*영	경상남도 남해군 고원면 탑동로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33	경남312020126***	3톤미만지게차	박*도	경상남도 남해군 황선면 황선로790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34	경남242020005***	굴착기, 지게차	박*용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35	부산192020021***	굴착기	장*욱	경상남도 남해군 황선면 서부로818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36	서울112020037***	3톤미만굴착기	김*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90번길 **	보관기간 경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남해군 공고 제2023-1336호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덕신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 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기간(예정) : 2019. 03. 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212-3 ~ 설천면 덕신리 1351-2까지	하천정비 L=2,050m, 교량설치 8개소, 낙차공 2개소, 보 19개소	남해군수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 통지문 발송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10. 13. ~ 2022. 10. 27.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재난안전과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055-860-3494)

- 보상사무소 :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길 13-6, 2층
(☎055-756-4440, F:055-756-4442, 보상업무 및 물건누락 문의)

다. 열람 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 여부)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방법

- 보상사무소 또는 남해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 시기

가. 열람기간 만료 → 감정평가업자선정(주민추천 등)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 및 공탁

6. 기타사항

가.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토지 및 물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합니다.

다.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물건 조사

사업명: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시행자: 남해군수

일련 번호	보상구분	메인	토지면적	물건연번	소재지 (남해군 행정면)	지번	지목 현황/구조 및 규 격	면적(㎡) 및 수량		용도지구지역	공유지분	지분별면적	소유자			비고	
								공유면적	권면적/수 량				성명	주소(동기)	성명		주소(동기)
1	토지	메인	1		덕신리	617-2	답	476.00	34.00	계획관리지역	1/1	34.00	김○재	남해군 성전면 덕신리			
2	토지	메인	2		덕신리	1108-1	과	747.00	24.00	계획관리지역	1/1	24.00	김○	남해군 성전면 덕신리	박○영	울산시 남구 달동	소유권이질청구권 기동기
3	토지	메인	3		덕신리	1109-2	답	1,345.00	218.00	생산관리지역	1/1	218.00	김○남	경상남도 남해군 월전면 장남로	농림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근저당권
4	토지	메인	4		덕신리	1109-1	도	202.00	27.00	생산관리지역	1/1	27.00	한○재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5	토지	메인	5		덕신리	1112-1	도	100.00	50.00	생산관리지역	1/1	50.00	박○용	남해군 성전면 덕신리			
6	토지	메인	6		덕신리	1117-37	도	20.00	20.00	생산관리지역	1/1	20.00	김○관	남해군 성전면 덕신리			
7	토지	메인	7		덕신리	1117-33	도	23.00	23.00	생산관리지역	1/1	23.00	김○원	남해군 성전면 덕신리			
8	토지	메인	8		덕신리	1117-34	도	50.00	50.00	생산관리지역	1/1	50.00	김○관	남해군 성전면 덕신리			
9	토지	메인	9		덕신리	1871-1	답	1,725.20	299.60	생산관리지역	1/1	299.60	김○주	남해군 성전면 덕신리			
10	토지	메인	10		덕신리	1140-69	도	26.00	26.00	생산관리지역	1/1	26.00	김○용	남해군 성전면 노량리			
11	토지	메인	11		덕신리	1366-2	도	36.00	36.00	생산관리지역	1/1	36.00	정○조	남해군 성전면 노량리			
12	토지	메인	12		덕신리	1850-1	답	1,177.60	202.70	생산관리지역	1/1	202.70	김○영	남해군 성전면 노량리			
13	토지	메인	13		덕신리	1394-16	도	14.00	14.00	생산관리지역	1/1	14.00	이○	남해군 성전면 덕신리			
14	토지	메인	14		덕신리	1394-1	권	717.00	717.00	생산관리지역	1/1	717.00	미○기	서○기			토지대량상 소유자
15	물건		3	1	덕신리	1109-2	들밭	20.00	1 식								
16	물건		5	1	덕신리	1112-1	농업용전기	26170952098	1 식								
합계		토지14						6,658.80	1,741.30			1,741.30	12				

남해군 공고 제2023-1340호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2022. 7. 11. 개정, 2023. 4. 1. 시행)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나.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4조~제5조)
 - 다. 민원인 편의 제공, 민원실의 연장 운영(안 제6조~제7조)
 - 라.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0월 3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001, 팩스 055-860-370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353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통보(안 제5조)
 -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6조)
 - 마.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7조)
 - 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제13조~제2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1월 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055-860-3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2 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 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남해 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지속 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추진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남해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남해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8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장과 환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3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남해군의 지속가능발전 기구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속가능발전 군민 정책제안
- 2.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 3.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실천 활동 전개
- 4.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 2.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총회)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7조(조직) ① 협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8월까지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등) 연도별 결산은 남해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보고서와 함께 제20조에 따른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협의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23-1356호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와 이용증명 서류 및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이용범위와 운영시간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개정(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개정내용 : 이동지원센터 설치(강행규정, 설치할 수 있다 →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 개정
 - 개정내용 :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매일 24시간)
 - 조례개정 : 제19조(설치·운영한다 → 설치하고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 개정
 - 개정내용 :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24시간),
운영범위(1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
 - 조례개정

- ▶ 제15조(상시운영 → 매일 24시간)
- ▶ 제18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군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 → 경상남도내와 부산광역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개정내용
 - ▶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삭제
 - ▶ 시행규칙 제6조제3호 변경(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조례개정 : 제9조, 제11조
 - ▶ 당초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변경 :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 판정자
- 기타 이용대상자 변경에 따른 등록심사 및 이용기간 개정 :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1월 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55,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860-3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 를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진료 목적에 한하여 최대 3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남해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제11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다만,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임신진단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
- 라.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다만,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한 기간

나.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출산일로부터 1년

다.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제3호” 를 “제3항제3호” 로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라)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할 수 있는 인근 광역시는 부산광역시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을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4조의5” 로, “설치·운영한다” 를 “설치하고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366호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안 제2조)
 - 나.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설치(안 제3조)
 - 다. 자전거 보험 가입(안 제4조)
 - 라.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안 제6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1월 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245,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055-860-3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자전거 보험 가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인(對人)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의 등록) 군수는 군민에게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4호나목 및 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동
2. 보관
3. 매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